금융감독원	**보 도 자 료**	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3.10.16.(월) 조간	배포	2023.10.12.(목)

담당부서					
	조사2국 공매도조사팀	책임자	국 장	이승우	(02-3145-5650)
		담당자	팀 장	심재호	(02-3145-5636)
	금융투자검사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김진석	(02-3145-7010)
		담당자	팀 장	최상두	(02-3145-7012)

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및 향후계획

Ⅰ. 개 요

□ 금융감독원은 **불법 공매도 근절**을 위해 **공매도 조사전담반** 설치('22.6월) 및 **조사팀 전환**('22.8월) **이후** 불법 공매도에 대한 **면밀한 감시**와 **집중적인 조사**를 실시하여 왔으며

* (붙임) '공매도조사팀 신설 이후 그간의 성과' 참조

○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온 **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행위**를 최초로 적발하였습니다.

□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는 2개사로,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공매도(매도스왑) 등 국내 **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***하는 **주요 공매도 주체** 중 하나로

* 해외 기관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공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글로벌 IB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고 동 IB는 이를 헤지하기 위해 시장에 공매도주문을 제출

○ 동사는 주식을 **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**하고 **사후에 차입**하는 방식 등으로 **불법 공매도를 지속**하였습니다.

□ 그간 **외국 투자자**들에게 **우호적인** 투자환경 조성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의 **위반행위**가 발견되어 **엄정한 조치**와 **재발방지가 필요**합니다.

○ 향후 **유사한 글로벌 IB**를 대상으로 **조사를 확대**하고, **수탁 증권회사의 위반가능성 여부** 등에 대해서도 **검사를 강화**할 예정입니다.

Ⅱ. 주요 혐의 내용

1. A사 관련

□ 홍콩 소재 A사는 2021.9월 ~2022.5월 기간 중 ○○등 **101개 종목**에 대해 **400억원 상당**의 **무차입공매도 주문**을 제출하였습니다.

○ A사는 **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**하면서 필요시 **부서 상호간 대차**를 통해 주식을 차입(대여)하는 과정에서

- **대차내역**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소유주식을 **중복계산***하여 **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**로 매도주문을 제출하였습니다.

* 예시 : ⓐ 부서가 ⓑ 부서에게 주식을 대여하였으나 동 거래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ⓐ 부서는 (종전의)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

○ 그 결과 **매매거래 익일**(T+1)에 **결제수량 부족**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**원인규명 및 시정 등의 조치**를 취하지 않고 **사후차입 등의 방식**으로 위법행위를 **사실상 방치**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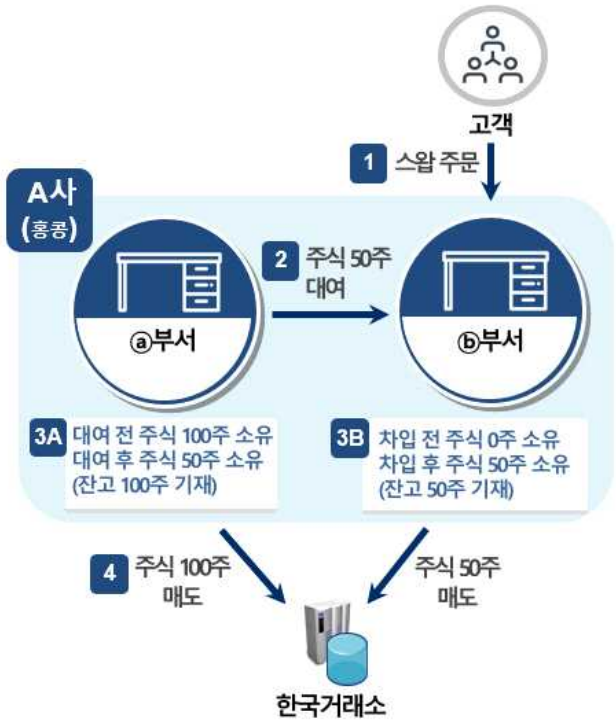

*** T일**

1 A사(홍콩)는 고객으로부터 **매도스왑(TRS) 주문**을 접수

2 글로벌IB A사 내 ⓐ부서가 주식 100주를 소유한 상태에서 ⓑ부서에 주식 50주 대여

3 **ⓐ부서**는 동 대여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종전의 **100주**를 **잔고**로 인식

ⓑ부서는 대여한 주식 **50주**를 **잔고**로 인식

A사는 총 150주를 잔고로 인식(**50주 과다**)

4 A사는 총 150주(ⓐ부서 100주 + ⓑ부서 50주)의 주식을 매도하여 **50주의 무차입 공매도** 발생

*** T+1 일**

5 결제부족수량(50주)에 대한 추가 외부 차입 및 대여주식에 대한 상환요청(→ T+2일에 정상결제 완료)

□ 또한, A사의 계열사인 **국내 수탁증권사**도 A사의 **무차입공매도 주문**을 **지속적으로 수탁**하였습니다.

○ 동사는 위탁자와 **공매도포지션·대차내역**을 **매일 공유**하였으며, **결제가능여부 확인 과정***에서 **잔고부족이 지속 발생**하였음에도 결제 이행 촉구 외에 **원인파악 및 사전예방 조치** 등을 취하지 않았습니다.

* 프리매치(Pre-match) 과정 : 국내 보관은행이 T+1~T+2 12시까지 위탁자의 매매내역, 주식잔고 및 결제지시서의 일치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로 "결제승인" 이전의 확인 절차

2. B사 관련

□ 홍콩 소재 B사는 2021.8월~2021.12월 기간 중 △△△등 **9개 종목**에 대해 **160억원** 상당의 **무차입공매도 주문**을 제출하였습니다.

○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**매도스왑계약을 헤지**하기 위해 **공매도 주문을 제출**하는 과정에서

-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수량이 아닌 **향후 차입가능한 수량**을 기준으로 **매도스왑계약을 체결**하고 이에 대한 헤지주문(공매도주문)을 제출하였습니다.

○ 이후 최종 **체결된 공매도 수량**을 기초로 **차입계약을 사후확정**하는 방식으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**위법행위를 방치**하였습니다.

※ 적발 이후 B사는 차입이 확정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체결하고, 동 수량만큼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·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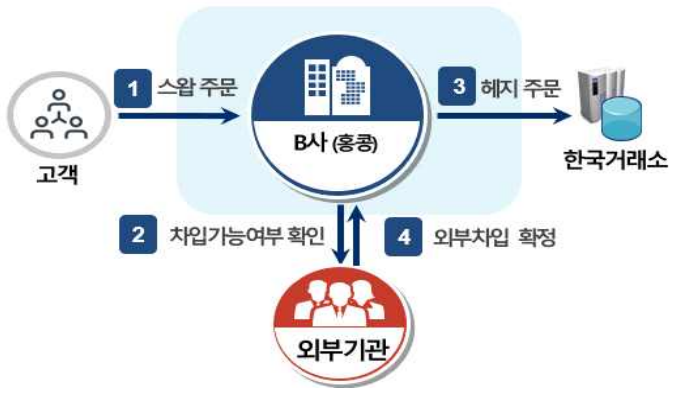

1. **B사(홍콩)**는 고객으로부터 **매도스왑(TRS) 주문**을 접수
2. 실시간으로 차입가능 여부를 판단 하는 시스템을 통해 외부기관으로부터 **차입가능 물량**을 **확인**
3. 차입가능수량 한도 내에서 시장에 **헤지주문** 제출
4. 대차 담당자가 헤지 주문이 체결된 만큼 **외부기관**으로부터 **차입**을 **확정**

Ⅲ. 향후 계획

1 **(엄중조치)** 이번 사건은 **PBS업무**(Prime Brokerage Service)*를 제공하는 **글로벌 IB**의 **장기간에 걸친 불법공매도** 행태로

* 고객(개인.기관투자자, 헤지펀드 등)에게 증권의 대여, 차입, 중개, 신용공여, 장외파생계약 체결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투자업무

○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**최대규모의 과징금 부과**가 예상되며 **증선위**의 **심의·의결**을 거쳐 **엄중**한 **제재조치**를 **진행**할 예정입니다.

○ 아울러 조치대상자에게 **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**을 **수립**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.

2 **(불법공매도 조사확대)** 금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**주요 글로벌 IB를 대상**으로 **조사를 확대**할 예정입니다.

○ 일부 IB의 경우 장개시 전 소유수량 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**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**이 발견되어 **조사중**이며, 여타 IB에 대해서도 **이상거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**하도록 하겠습니다.

○ 특히, 필요시 **해외감독당국과 긴밀한 공조***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해외 소재 금융투자회사들의 **불법 공매도 행위를 엄단**, 국내 **자본시장의 질서 확립**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

* 금융위.금감원은 국제증권감독기구(IOSCO)의 EMMoU 정회원으로서 최근까지 해외 감독당국(예: 홍콩 SFC)과 공조하에 자금출처 확인, 정보교류 등 활발한 국제공조를 수행

3 **(국내 증권사 검사강화)**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**국내 증권사**에 대해서도 **검사를 강화**하겠습니다.

○ 국내 증권사는 **계열회사 관계, 수수료 수입** 등 **이해관계**로 위탁자의 **위법행위**를 **묵인**할 가능성이 있는 바,

○ **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,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** 등을 **면밀히 점검**하여 위법사항 발견시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

붙임 공매도조사팀 신설 이후 그간의 성과

□ **(공매도 전담반 설치)** **불법 공매도 근절**을 위해 '22.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**'22.8월 공매도조사팀**으로 **확대·개편**(4명→8명)

○ **무차입 공매도** 등 불법 공매도와 **공매도**를 **악용**한 **불공정거래**에 대해 **면밀한 감시**와 **집중적인 조사**를 수행

□ **(조사 및 조치실적)** '22.6월 이후 51개사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 대해 **집중조사**를 **실시**하여 **과징금 93.7억원*** 및 **과태료 21.5억원** 부과(총 115.2억원)

* 자본시장법 개정('21.4월)으로 '23.3월 최초 과징금 부과

○ 아울러, **공매도**를 이용한 **불공정거래**를 **집중조사**하여 **악재성 정보 공개** 전 무차입공매도 등 **고의적 공매도 거래***를 **최초로 적발**

* 주가 하락을 위해 매도스왑거래를 이용하거나 무차입상태에서 고의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매차익 극대화 등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공매도를 이용하는 행위

< 공매도 위반에 대한 연도별 조치 현황(무차입 공매도) >

(단위 : 명, 억원)

구분	'20년	'21년	'22년	'23.9월※
위반자수(외국인)	4(4)	14(14)	28(25)	30(21)
과태료·과징금	7.3	8.0	23.5	104.9

※ 추가로 23년중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자 25명(외국인 4명)에게 과태료 7.8억원 부과

□ **(외국계 증권회사 간담회)** 외국 투자자들의 반복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'23.9월 **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**들과의 **간담회** 개최

○ 외국 투자자 및 증권회사에 **불법공매도 사례 및 유의사항**을 **전달하고, 국내 주식시장**에 참여하는 **외국 투자자들**에게 잔고관리 관련 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